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송당사자에게 쌍방 불출석 통지〉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71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3. 관계기관 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4.
3. 회부연월일 : 2025. 7.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 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항소심의 경우 항소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으로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소 취하 간주되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인 원고(항소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 취하 간주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한 것임.

이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에게 법원이 통지하여 소 취하 간주를 막기 위한 기일 지정신청 등의 대응을 원고 본인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2회 연속 변론기일 불출석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 간주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하도록 하여,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원고 본인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8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였는데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다는 취지로 새 변론기일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② (생략) <u><신설></u>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의 경우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법원은 제2항의 기한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다는 취지로 제2항의 변론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u>제3항</u>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 ---제4항-----. ----- -----.

개정안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의 불출석 사실을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통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른바 “쌍방 불출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고(1회 불출석), ② 이렇게 새롭게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에도(2회 불출석) 1개월 이내에 재판장에게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¹⁾한 것으로 보며, ③ 재판장에게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다시 잡힌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3회 불출석)에는 결국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²⁾

1)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은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³⁾ 법원 실무는 변론기일에 양 쪽 대리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양 쪽 대리인에게만 통지하고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쌍방 불출석 제도를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민사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당사자 모르게 재판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하면 소 취하가 간주되어 당사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새로운 변론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사실 등을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송대리인의 불출석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도록 하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소송대리인의 무단 불출석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원고 등 소송당사자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인의 사건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면 제출서류, 기일 진행 내용, 소송

3)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출석 여부, 다음 기일 지정 여부 등 소송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즉,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서비스를 통해 소송당사자가 기일불출석 등 소송대리인의 불성실 행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화면4>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

빠르고 편리한 고품질 사법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동의없이 링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또는 다량 저장, 재가공 등 자료수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및 등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송달로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화생/파산 사건은 2023. 3. 1.일부터 수원화생법원 및 부산화생법원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 구합 당사자명 필수입력 ☐ 사건번호입력모드

774494 새로고침 음성듣기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하 검색

둘째, 현재 거의 모든 민사소송에서 종이소송 대신 전자소송을 통한 전자적 송달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⁵⁾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당사자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⁶⁾에 가입하고 사건

4)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5) 법원행정처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을 합의·단독·소액사건으로 구분할 때 합의사건은 28,907건(3.6%), 단독사건은 268,655건(33.4%), 소액사건은 507,804건(63.1%)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전자소송의 접수 건수는 제1심을 기준으로 볼 때 합의 28,892건, 단독 268,622건, 소액 506,956건으로, 거의 모든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6)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등록을 하여 전자적 송달을 받도록 하거나, 소송당사자에게 우편을 통한 송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임. 이 경우 송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송달 불능으로 인한 재송달 등이 진행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소송절차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의 불성실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현황과 소송대리인의 무단 불출석 방지 효과, 새로운 통지 절차 도입으로 인한 소송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3. 관계기관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원고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규칙이나 예규가 아닌 법률에 담아야 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1